

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1. 2. 5.>

시·도간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발급일 | 처리기간 | 즉시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소유자 | 성명(명칭) |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 |
| | 주소 | 법정동코드 | | |
| | 전자우편주소 | 전화번호 | 휴대전화번호 | |
| 자동차 | 등록번호 | 신 등록번호 | | |
| | 사용본거지 | 법정동 코드 | | 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5조제1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 |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 | 수수료 |
|---|---|--------|
| 1. 자동차등록증 1부 (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 2.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(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| 1.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,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(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3. 자동차등록원부 | 1,300원 |

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)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시·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(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)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(「자동차등록령」 제25조)
-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.
-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5항제2호)
-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,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(등록사무소 또는 시·군·구)에 알려주십시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]